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39
----------	-------

발의연월일 : 2018. 10. 30.

발의자 : 김종희 · 이용주 · 최경환(평)

황주홍 · 유성엽 · 이찬열

조배숙 · 장병완 · 김수민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동법에 따르면 1962년 6월 10일부터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원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만을 법화로 하고,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며 그 환가비율은 10환에 대하여 1원으로 하고, 통화와 금전채무에 의한 거래는 일체 금지됨.

이에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緊急通貨措置法 폐지 법률안

緊急通貨措置法은 폐지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